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38-1번지 일원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한국감정원(“청약홈” 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자에 한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선정합니다.[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인천광역시, 경기도), 지방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에서 '20.03.16 입주자 모집공고'가 진행되는 단시부터 적용됩니다.]
- 부적격자는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한국감정원(“청약홈” www.applyhome.co.kr) 인터넷청약 접수 및 동·호수 배정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신청자가 안내문의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을 충분히 안내, 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급 규모

- 공급위치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38-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1층 ~ 지상25층 / 총5개동 / 총 375세대
- 주택형 : (59Am² : 94세대, 59Bm² : 45세대, 74m² : 81세대, 84m² : 155세대)

구분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공용 면적	계약 면적	총공급 세대 수	특별공급 세대 수					일반분양 세대 수
		주거 전용	주거 공용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계	
민영 주택	59A	59.9327	19.2167	79.1494	44.2413	123.3907	94	10		19	3	33	61
	59B	59.4251	20.0866	79.5117	43.8665	123.3782	45	5		9		14	31
	74	74.9182	24.6782	99.5964	55.3034	154.8998	81	8	19	16	3	48	33
	84	84.9707	27.0195	111.9902	62.7240	174.7142	155	15	19	31	6	70	85
합계							375	38	38	75	12	163	212

- 기관별 배정세대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36조 85m²이하 민영주택 10% 범위 내 공급

구분		지역	59A	59B	74	84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세대수 (괄호안의 숫자는 예비입주자 세대 수)	장애인	경기도	3 (9)	1 (3)	2 (6)	3 (9)	9 (27)	
		서울특별시	1 (3)	1 (3)	1 (3)	2 (6)	5 (15)	
		인천광역시	1 (3)	1 (3)	1 (3)	2 (6)	5 (15)	
		소계	5 (15)	3 (9)	4 (12)	7 (21)	19 (57)	
	국가유공자			1 (3)	1 (3)	1 (3)	4 (12)	
	장기복무 제대 군인			1 (3)		1 (3)	3 (9)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1 (3)		1 (3)	5 (15)	
	중소기업 근로자			2 (6)	1 (3)	1 (3)	3 (9)	7 (21)
	합계			10 (30)	5 (15)	8 (24)	15 (45)	38 (114)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 및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30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은 해당기관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결정하며 대상자 추천 시 청약 주택형 필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자 추천세대 여부는 기관이 정하고 예비자 추천 시 별도 순번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2)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및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특별공급 청약 불가합니다.
무주택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공급신청 하려는 지역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이 제한됩니다.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

청약자격요건	재되어 있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의거 국가유공자, 국가 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의 경우 입주자저축 요건 의무 없으며 중소기업근로자, 장기복무군인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종류		추천기관		통장 사용	특공 1회 제한	유족 신청 가능	공공 임대주택	국민 주택	민영 주택
	국가 유공자 등	1.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처(경기북부보훈지청)	X	○	○		○	○
		2. 보훈대상자			X	○	○		○	○
		3. 5.18유공자			X	○	○		○	○
		4. 특수임무유공자			X	○	○		○	○
		5. 참전유공자			X	○			○	○
	장기복무제대군인				○	○			○	○
	10년 이상복무군인		국군복지단(복지사업운영과)		○	○			○	○
장애인		경기도(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X	○			○	○	
		서울특별시(서울시청 장애인복지지원과)								
		인천광역시(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중소기업근로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지역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용면적 85㎡		3,000,000원		2,500,000원		2,000,000원				
전용면적 102㎡		6,000,000원		4,000,000원		3,000,000원				
전용면적 135㎡		10,000,000원		7,000,000원		4,000,000원				
모든 면적		15,000,000원		10,000,000원		5,000,000원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기준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총액 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신청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단,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제외)]
-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청약 방법으로 청약신청을 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선정(동·호 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이 불가합니다.)
-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신청 일정

구분	일자	참고사항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0.06.25.〔목〕예정	청약홈 및 당사 홈페이지, 견본주택
사이버 견본주택 개관	2020.06.26.〔금〕예정	www.guri-cantavil.co.kr
특별공급 접수일자	인터넷 청약	청약홈 인터넷 청약 (청약홈 홈페이지 : http://www.applyhome.co.kr) ※ 순 은행 가입자
	견본주택 방문 청약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2020.07.15.〔수〕예정	청약홈 홈페이지 (http://www.applyhome.co.kr)
계약 기간	2020.07.27.〔월〕예정 ~ 2020.07.29.〔수〕예정	추후 개별통지

※ 2018.5.4. 개정 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한국감정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 (10 : 00~14 : 00)가 가능합니다. 단, 견본주택 접수 시에는 특별공급 신청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필요서류 별도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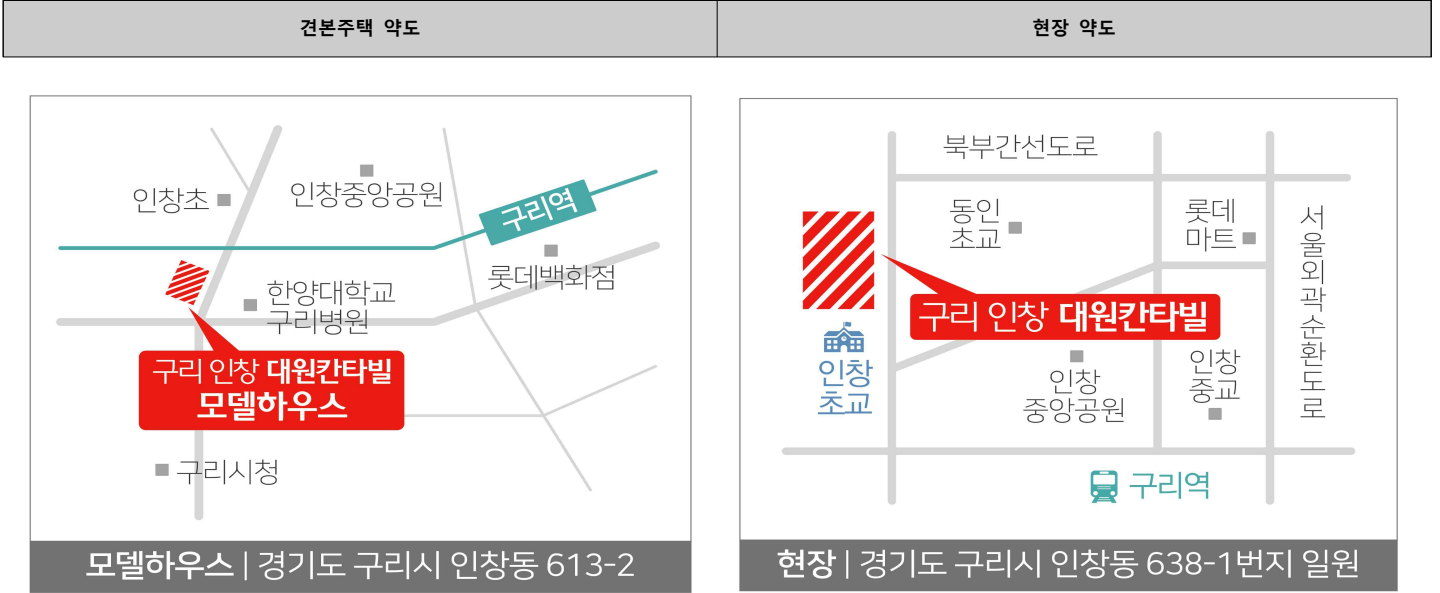
※ 신청일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4. 기타 사항

- 상기 청약 계획은 인·허가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 2020.06.25.〔목〕예정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견본주택, 청약홈(http://www.applyhome.co.kr), 사이버 견본주택(www.guri-cantavil.co.kr) 및 대원 홈페이지(http://www.daewon.co.kr)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반드시 확인 후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에 최종 통지된 대상자는 통지 시 기재된 주택형으로 한국감정원에 신청내역을 등록함에 따라 청약자 임의로 주택형 변경 등 추천내역과 상이하게 청약 접수가 불가합니다.
- 기관추천 기준에 따른 추천 대상으로 선정되어 사업주체에 통지된 대상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접수 마감시간 17 : 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 접수 중이라도 접수가 종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체결 전 서류 확인 및 관계기관의 전산검색을 통해 구리시 거주요건, 과거당첨사실, 주택소유사실 등 입주대상자 및 세대원의 자격확인을 통해 부적격 사항 확인 시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당첨이 확정(경쟁 시 탈락할 수 있습니다.)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신청자는 타 특별공급(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일정 및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

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현장 위치 및 견본주택 위치도



● 정부정책 및 인·허가 승인 일정에 따라 견본주택 관람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